

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3. 12. 1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3. 11. 26
- 다. 회부일자 : 93. 11. 30
- 라. 상정일자 : 93. 11. 30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특별회계 통. 폐합조치에 따른 공유임야 특별회계 정비와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
요율체계 정비 및 국. 공유재산의 처분, 관리기준을 일치토록 조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90년 11월 1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항이 새로이 신설되어 기존 1항
의 내용이 제2항이 되므로 제22조 제4호를 영 95조 제2항으로 개정
- 모든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산림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준용토록 체계를
정비
-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일치토록 건물 층별 차등
적용토록 개정함.
- 제26조의 대부료 납기일을 60일 이내로 단일화
- 제34조, 제35조, 제36조의 공유임야 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하여 94년 1월 1일부터 일반

회계로 관리 운영되도록 개정

- 제39조 2항의 수의계약의 매각 범위를 확대토록 정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각 조문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특별회계 통·폐합 조치에 따른 관련조문폐지등 본 조례의 개정(안)은 제안설명 요지와 같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좋다고 사료됨.

4. 토론요지

본 개정조례(안) 이외도 상위법 개정과 존치의 불필요성에 따라 개정대상이 상당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반적인 조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,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건의함.

5. 수정안 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반대없음.

7. 첨부 : 개정조례(안) 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직할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4호중 “영 제95조 제1항”을 “영 제95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25조 제2호 “나”목 다음에 “다.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”를 신설하고, 같은조 제3호중 “나”목 내지 “마”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“바”목 및 “사”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2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
- 다. 3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
- 라. 4층 이상은 부지 평가액의 각 5분의 1
- 마. 지하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
- 바. 지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
- 사. 지하 3층 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각 5분의 1

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“30일 이내”를 각각 “60일 이내”로 한다.

제34조,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폐지한다.

제39조의 2에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일단의 토지의 면적의 특별시,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,000㎡ 이하, 기타 지역에서는 2,000㎡ 이하로서 1981. 4.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(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)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(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)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, 다만,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,000㎡ 또는 2,000㎡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회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)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~3. (생략)</p> <p>4. 영 제95조 <u>제1항</u> 제1호, 제2호, 제6호 내지 제8호, 제11호, 제13호, 제14호,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제23조(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)</p> <p>①~④(생략)</p> <p>⑤ <u>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,000분의 10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5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.</p>	<p>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)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…… <u>제2항</u> ……</p> <p>제23조(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)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25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
<p>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(신 설)</p> <p>3.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.</p> <p>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. <u>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</u> 다. <u>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라. <u>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마. <u>지하실(2층 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)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(신 설) (신 설)</p>	<p>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.</u></p> <p>3.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다. <u>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</u> 라. <u>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</u> 마. <u>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바. <u>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</u> 사. <u>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</u></p>
<p>제26조(대부료의 납기) ①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<u>30일</u>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 2.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<u>30일</u> 내,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<u>30일</u> 이내.</p>	<p>제26조(대부료의 납기) ① <u>60일</u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60일</u> <u>60일</u> ...</p>

현행	개정
<p>제34조(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) ① 공유 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, 국·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, 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.</p>	<p>제34조(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)</p> <p>① 삭 제</p> <p>② 삭 제</p>
<p>제35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유재산(공유림 제외)의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 : 그 수입금액의 10% 공유임야 매각대, 대부료 : 그 수입금액의 100% 국유재산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변상금 등 :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% 일반회계 전입금 : 부족재원 <p>②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p>	<p>제35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</p> <p>① 삭 제</p> <p>1. 삭 제</p> <p>2. 삭 제</p> <p>3. 삭 제</p> <p>4. 삭 제</p> <p>② 삭 제</p> <p>③ 삭 제</p>
<p>제36조(준용규정)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.</p>	<p>제36조(준용규정) 삭 제</p>

현행	개정
<p>제39조의 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(신 설)</p>	<p>제39조의 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,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,000㎡이하, 기타 지역에서는 2,000㎡ 이하로서 1981. 4.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(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)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(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)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, 다만,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,000㎡ 또는 2,000㎡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.</u></p>